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7월 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을 예우하고자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고 동 조례 제5조에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,
- 나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을 통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의2제1호바목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45, 팩스 032-440-8766, 이메일 : adiosever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“한다) 또는 군수·구청장”을 “한다)”로 하고,
같은 조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
우대상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<u>한다</u>) 또는 <u>군수·구청장</u>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,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.	제4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 ----- ----- <u>한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: 50퍼센트 감면(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~ 마. (생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바.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</u>
2. ~ 10. (생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